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4. 18 선고 2023가합5649 판결 [연대보증채무금 청구]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4. 4.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391,566원 및 그 중 352,250,667원에 대하여 2023.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9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원금 386,792,789원의 연대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3. 2. 22. ‘피고는 원고에게 430,182,858원 및 그 중 386,792,789원에 대하여 2013.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2013차203호, 이하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은 피고에게 2013. 3. 21. 송달되어, 2013. 4. 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2하단7063호로 파산을 선고하였다가, 2014. 3. 21.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였고, 2014. 4. 23.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2012하면7069호,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위 파산절차의 채권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모두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면책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나, 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면책이 된다(제566조 제7호). 채무자회생법이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을 2013. 3. 21.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았음이 명백하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과실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면책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원금 386,792,789원 중 34,542,122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그 이율이 2017. 3. 16.까지는

281,506,066원, 2017. 3. 17.부터 2018. 4. 29.까지는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59,207,063원, 2018. 4. 30.부터 2023. 3. 20.까지는 연 12.97%의 이율로 계산한 223,427,770원, 2023. 3. 21.부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이 연 12.97%라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352,250,667원(= 연대보증채무 원금 386,792,789원 - 일부 변제 34,542,122원) 및 지연손해금 564,140,899원(= 281,506,066원 + 59,207,063원 + 223,427,770원)의 합계 916,391,566원(= 352,250,667원 + 564,140,899원)과 그 중 원금인 352,250,667원에 대하여 2023.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9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룡, 판사 이종훈, 판사 김연수